



2017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세계 바다 곳곳에서 신 해양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해양수산 강국으로 이끄는 데  
조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수산협력센터장 최경삼입니다.

우리 협력센터는 2014년 3월 설립되어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FTA 등 수산통상 협상 지원 업무와 ODA사업 등 해외수산업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1957년 6월 지남호의 인도양 참치조업을 시작으로 진출 60주년을 맞아 원양어업 개척자들의 희생과 노고는 물론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1960~1970년대 명실상부한 외화벌이와 수출주력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발자취 및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침체된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하고 어려워지는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원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조업 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준법조업은 원양어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역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모범적인 원양 어업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을 기반으로 다가올 60년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조업 보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백서가 국제수산기구 동향, 국제협상 관련정책 추진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해양수산부와 원양협회, 협력센터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장

최 경 삼



# 2017년 해외수산협력센터 연대표

## 2 February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회기간 협상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201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3 March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 4 April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5 May

제119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제1차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회의

'17 JPA 한–미 IUU어업근절 워크숍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 6 June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4차 당사국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7 July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

---

## **8 August**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특별회의

---

## **9 September**

---

제16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류교역 소위원회 회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3차 기술이행위원회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9차 연례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미국 수입수산물 현지조사

---

## **10 October**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4차 연례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2017년 하반기 웹서버 정기교육

---

## **11 November**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기후 회복력 강화 회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이탈리아 양자 심포지엄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 **1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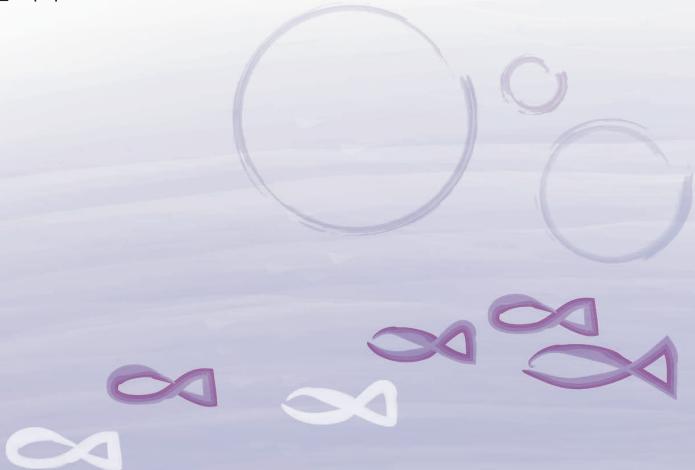
---

제158차 국제연합(UN) 세계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제33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7차 의장단 회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연례회의

제11차 WTO 각료회의



# contents



## 제1장 일반기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3. 국제세미나-ROK-USA JPA
4. 한-이탈리아 양자 심포지엄

##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3.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4.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5.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Meeting of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10-12 July 2017 Sappor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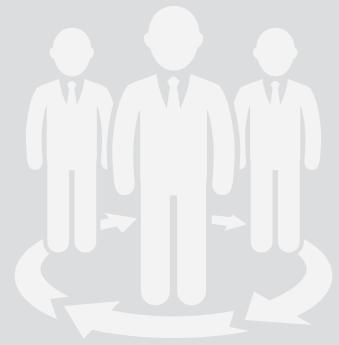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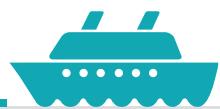
## 제3장 통상

1. 한-이스라엘 FTA
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3. 제11차 WTO 각료회의
4. 미국 수입수산물 현지조사

## 부록

1. 201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2. 2017년 하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제1장 일반기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19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10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2.1 제1차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12
2.2 제16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류교역 소위원회 회의	16
2.3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기후 회복력 강화 회의	18
2.4 제158차 국제연합(UN) 세계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20
2.5 제33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7차 의장단 회의	22
3. 국제세미나-ROK-USA JPA '17 JPA 한-미 IUU 어업근절 워크숍	23
4.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이탈리아 양자 심포지엄	24



# 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19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19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The 119<sup>th</sup>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Fisheries
- 기간/장소 : 2017.5.10.~5.12.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 2. 참석규모

- 참가국 : OECD 회원국 30여 개국(미국, EU,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 러시아, 대만, 아르헨티나, FAO 등 8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OECD 대표부



## II. 회의결과

### 1. 2017 수산업 동향 보고서

- 다음 수산위원회('17년 11월)에서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회원국이 적기에 관련 자료 및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음
- 중국 및 아르헨티나는 BBNJ(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관련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참여가 필요, 공해자유와 관련된 원칙이 손상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 2. 수산분야 무역협상 동향

- 동 작업이 제11차 WTO 각료회의('17년 12월 개최)에 활용될 수 있도록 OECD 사무국 차원에서 회원국의 FSE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회원국들이 보고서 내용을 5월 22일까지 검토하여 사무국에게 알려주기로 결정
  - 회원국들은 그간 연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던 수산보조금 분야에 분석을 시도한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보고서 내용과 공개시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을 보임

### 3. 수산양식 혁신 플랫폼

- 우리나라는 명태양식, 사하라 사막에서의 새우 양식, 미래양식포럼 등을 수산양식 분야 혁신 사례로 발표

### 4. 기타

- 지속가능한 수산관리 제도개혁 의제와 관련 사무국이 아국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와, 회원국의 수산업 분야 동향 보고 의제에서 FAO 세계수산대학 진행상황을 발표
  - 또한, IUU 어업 근절 의제와 관련해서 사무국은 동 과제에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요 비회원국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아국은 FAO PSMA(항만국조치협정) Umbrella Program에 참여하여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할 계획임을 발표

# 2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 2-1

### 제1차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차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First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2009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 기간/장소 : 2017.5.29.~5.31. 노르웨이 오슬로
- 의장(조정관) : Mr. Vidar Landmark(노르웨이)

##### 2. 참석규모

- 참석국 : 한국, 미국, 일본, EU 등 정부관계자, ICCAT, IMO 등 국제기구, WWF 등 비정부기구  
약 1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회의결과

### 1. 2009 FAO 항만국 조치협정 현황 및 발전 사항

- (현황) FAO 사무국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47개국과 EU에서 '항만국 조치협정' 비준서 기탁을 안내, 참석자들은 협정이행을 강화하여 IUU어업 근절 노력 및 자국의 수산관리와 감시 강화를 강조
- (발전사항) 당사국들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준서 기탁을 요청하였으며, 협정 이행을 위한 다음 절차를 추진을 위해, 본 논의 결과가 중요함을 언급, 해양 컨퍼런스('17.6.5.~9. 뉴욕 개최)나 기타 국제회의 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알리고 협정을 더욱 잘 활용할 것을 요청
 

\* (한국) 비당사국들의 비준서 기탁을 촉구, 초기 검색관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착 단계 임을 설명

### 2. 협정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 검토

- 사무국은 FAO와 RFMO, 기타 국제기구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항만국, 기국, 기타 국가들의 책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강조
  - 협정 요구사항, 정보 전송 및 전자 교환, 공개에 대한 안내, 정기 · 체계적 모니터링, 이행상황 검토, 적절한 비공식 회담 및 회기간 회의 소집 필요 등 언급
- 항만국 조치협정(PSMA) 하의 항만국 및 기국 책임에 대해, 몇몇 당사국들은 RFMO(지역수산 기구)가 협정 이행을 도와줄 중요한 기관임을 확인
- RFMO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항만국 조치나 MCS 이니셔티브 등 수많은 성공적 이니셔티브들이 강조되었으며,
- 당사국들은 국가 및 지역이 다르고,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운영 실정에 맞는 접근법이 요청되므로, PSMA 이행에 대한 안내가 너무 규범적이어서 안 된다고 언급
- 국제해사기구(IMO)는 항만국 조치 활동이 국가 및 지역, 국제 수준에서 교차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
- 당사국들은 관련 템플릿을 통해, 지정된 항만국, 국가적 컨택 포인트, 협정 이행에 유용한 기타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수집에서 FAO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동의
- FAO는 협정 이행에 특히 어려운 군소도서개발국(SIDS) 등의 역량 개발 노력을 위해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되었으며,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비당사국 지원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안내, 몇몇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 \* (한국) 항만국조치협정은 전 세계적이고 공개된 모든 항만에 적용되므로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남아시아 5개국(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을 대상으로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설명

### 3. 전자적 정보 교환에 대한 논의

- 자료 교환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이 채택되어야 하며, 당사국들이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지정된 항만이나 국가적 컨택 포인트 등, 우선 기본적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에 동의
- 국가적 컨택 포인트를 확인하고 FAO에 제공, 초기에는 FAO의 담당자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고 언급, 기관 연락처와 몇몇 개별 컨택 포인트가 제출되어야 함에 동의, 기관 연락처는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개별 연락처는 당사국들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정보교환 메커니즘과 기타 기술 문제를 위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작업반이 설치되어야 함에 동의, 동 작업반은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IMO 및 RFMO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를 포함하며, 기술 작업반은 2018년도에 소집될 예정
  - \* (한국) IUU 등록어선 등의 경우 FAO사무국에서 홈페이지에 제재, 당사국에 메일 통보, 정보를 받은 당사국은 IUU어선 입출항 등 상황을 사무국 또는 당사국에 통보해야 함을 발언

### 4. 개발도상국 요청사항(임시실무그룹 설치)

- \* 항만국조치협정 제21조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임시실무그룹 설치에 관한 초안을 2011. COFI에서 마련
- 사무국은 '11. 11. 로마에서 개최된 수산위원회의 임시실무그룹 설치관련 사항을 소개(초안으로 수정필요, 기금사용 방식 결정 사항 없음)
- 당사국은 협정 제6장에 따른 작업반을 설치하고, 부록 5에 첨부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승인
  - 임시작업반 참석범위 중 옵서버에 관한 사항 및 임시작업반 활동사항에 대한 수산위원회 제출을 확정
- 기금 메커니즘을 위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제6장에 따른 작업반이 논의 및 조정하며, 작업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작 및 매년 개최 확인



## 5. 협정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토, 평가

- (평가방식 등) 협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구체적 설문지가 개발에 동의, 설문지를 통해 처음에는 2년마다 이행 상황을 평가, 이후에는 당사국이 결정한 주기에 따를 것에 동의
- (당사국 회의 절차에 대한 규정) 사무국이 FAO 총회과 수산위원회(COFI)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둔, 당사국 회의 절차 규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 (차기회의 일자 및 장소) 협정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 4년마다 회의를 개최, 당사국들은 특히 이행 초기에는 회의가 더 자주 개최되어야 함에 동의, 필요시 추가적 기술 회의를 병행 2년마다 회의 개최 합의
  - 제2차 회의가 2019년 전, 칠레에서 사무국이 확정한 날짜에 개최될 것임에 동의, 2022년에 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제안도 수락, 협정 이행 검토 및 평가를 위한 당사국 회의는 2020년에 개최

## 2-2

### 제16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류교역 소위원회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6차 FAO 어류교역 소위원회 회의  
16<sup>th</sup> Session of the FAO COFI Sub-Committee on Fish Trade
- 기간/장소 : 2017.9.4.~9.8. 대한민국 부산
- 의장(조정관) : Mr. Jeonghwan Park(한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NGO 단체, 옵서버 등 1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외 13명\*

\* 해수부(4), 수산과학원(4), 수품원(3), 해외수산협력센터 각 의제 담당자로 구성

#### II.

#### 회의결과

##### 1. 어류교역 최신 동향

- 수산부문에서 교역은 고용 창출, 식량 공급, 수입원, 경제성장, 영양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 수산물 교역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 이후 지난 2년 전부터 둔화세 그러나 총생산 및 소비량은 지속 증가

##### 2. 수산가치 체인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교역 연관성

- 수산업의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로 인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형태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국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3. 어획증명제도(CDS)를 위한 자발적 지침

- CDS는 15차 어류교역소위('16.2.) 이후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제40차 총회('17.6.)에 제32차 수산위 보고서 채택으로 시행



#### 4. CITES 관련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 상업적 수생생물관련 문제협력 강화를 위해 FAO와 CITES간 MOU('16), MOU에 따르면 FAO 자문단은 CITES 제안서 평가 및 검토할 수 있음

#### 5. 해양보호구역(MPA)이 생계, 교역, 식용어류 공급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MPA가 수산업, 생계, 식량안보와의 영향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 생계와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안지역에서의 MPA 중요성

#### 6. 기후변화가 미래 어류공급, 교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가 생산 및 소비시스템, 수산가공품 교역에 미칠 영향을 발표

#### 7. 세계수산대학 설립

- 방글라데시 대표의 제안으로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기타 안건으로 추가됨

## 2-3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기후 회복력 강화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FAO APFIC 기후 회복력 강화 회의  
FAO/APFIC Regional consultation “Building Climate Resili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Asia-Pacific”
- 기간/장소 : 2017.11.14.~11.16. 태국 방콕

#####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16개 회원국, NGO 및 옵서버 등 약 6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 회의결과

##### 1. 파리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논의

- 파리협정 및 국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수산업에서의 기후변화 해결노력 방안 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양식업에서의 기후변화 해결노력 방안 논의

##### 2. 참가국별 양식 분야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 전략 소개

- (대한민국) 양식분야 기후 회복력 강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이행 방안(14분)
  - (1장) 대한민국 양식 산업 개요
  - (2장) 양식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현황 사례
  - (3장)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방안
  - (4장) 전략 정책 이행 모범 실무



-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국가적 정책 및 전략(양식)
  - 대한민국 포함 총 16개국 국가별 발표
-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국가적 정책 및 전략(수산)
  - 총 15개국 국가별 발표

### 3. 실무 그룹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 회의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방안 논의
  - (기후 변화 주요 위협) 생산 공정, 사회경제적 관점, 생계, 여성 및 취약층, 자원 및 환경
  -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원 인지 및 배출 저감 방안
  - (아-태지역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변화 발생원 저감 방안) 구체적 역량 강화 방안, 지식 및 기술 공유 방안, 구체적 재정 제약, 법률 체계, 정부 정책, 해양 자원 관리 방안, 정책 및 행동 계획
-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기후 변화 적응 및 탄소 배출 저감 정책 전략 제안
  - (정책 제안) 역량 강화 및 개발, 지식/기술 개발 및 이전 등
  - (전략)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식 및 기술 개발, 이전 정책 방향
  - (제약) 양식 분야의 기후 회복력 강화 노력의 주요 차이점 혹은 제약
  - (지역적 전략)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적 전략 및 행동 제안
  - (행동 계획) 기후변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관리 방안 등 구체적 목표, 타겟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방안
  - (기후 회복력 강화 분야) 국가 전략 및 이행 계획 개발, 연구 및 기술 개발, 양식 분야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프로그램/프로젝트 이행 방안, 현재 이행 중인 모범 실무 사례/교훈

## 2-4

### 제158차 국제연합(UN) 세계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58차 유엔 세계 식량농업기구 이사회  
158<sup>th</sup> UN FAO Council
- 기간/장소 : 2017.12.4.~12.8. UN FAO 본부, 이태리 로마

#####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회원국 1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 회의결과

##### 1.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진행상황 발언

- 제158차 이사회 기타 의제(Any Other Matters)에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언하였음

##### 2. 2018–19년 사업예산 조정안

- 이사회는 제40차 총회의 지침을 반영하여 조정된 2018–19년 사업예산안을 환영했으며, FAO 전략적 목표 팀에 전문직 5개 신설, 기능적 목표 관련 주요성과 지표 조정, 사업이행 개선을 위한 조직구조개편(대외남남협력과로 명칭 변경), 항목간 예산조정 등을 승인함
  - 특히, 이사국은 FAO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촉진을 위해 전략적 프로그램 팀에 전문직 5개(P-4급) 신설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프로그램 팀 내 지속성이 확보되어 사업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
- 또한, 이사국은 2018년 세계 식량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식량안보에 관한 FAO의 역할에 대한 고위급 행사를 자발적 기여금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예산을 포함한 행사추진 계획을 검토키로 합의



### 3. 105차 현장 및 법률문제위원회(CCLM) 결과

- 이사회는 교체 이사국 관련 일반규정 개정에 관해 독립의장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반규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협의결과를 차기 현장 및 법률문제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함
  - 이사회는 교체 이사국 관행에 대해 모두 합의했으나, 필리핀(아시아 그룹), 태국 등은 교체 이사국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국가 등은 FAO의 일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 사무국은 39차, 40차 총회에서 모두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 필요성을 설명하며, 교체 이사국 관련 근거는 일반규정 개정이 아닌,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EU 국가들은 교체 이사국 관련 일반규정 개정은 모든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어어야한다는 점을 강조

### 4. 제44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결과 보고

- 이사회는 CFS 44에서 승인된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을 환영했으며, 이를 농업위원회, 산림위원회, UN고위급정책포럼, UN 산림포럼, 생물다양성 협약 등 관련 정책기구에 제안할 것을 요청함
  - 한국(아시아 그룹), 일본, 에스토니아(EU 그룹)는 CFS 정책결과물이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제기구, 국가차원, 민간부문 시민사회에서 CFS 정책결과물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
  - 에스토니아(EU 그룹)는 CFS 정책결과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확대 배포를 위해 각국 장관을 포함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급의 참여 확대를 제안함
- 이사회는 CFS에서 격년주기로 주요 CFS 정책결과물 이행 경험 및 성공 사례의 공유를 위해 CFS 기간 국제행사 개최 계획을 인지했으며, 45차 CFS 기간(2018) “국가식량안보 맥락에서의 식량권 실현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주제에 관한 행사개최를 환영함

## 2-5

### 제33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7차 의장단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7차 의장단 회의  
7<sup>th</sup> FAO COFI 33 Bureau Meeting
- 일자/장소 : 2017.12.11. FAO 본부, 이탈리아 로마
- 의장(조정관) : Mr. Gibbons Flywh(미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수산위 33차 의장단 5개국(한국, 네덜란드, 가나, 미국, 페루),  
FAO 수산양식국 관련 FAO 사무국 등 포함 약 1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 회의결과

##### 1. 제33차 FAO 수산위 잠정 의제 마련

- 회기간 의장국에 회람된 잠정 의제에 큰 이견이 없어 이를 제33차 FAO 수산위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에 참석 의장국이 동의하였음

##### 2. FAO 세계수산대학 진행 보고

- WFU 시범사업 운영현황 설명 및 '19년 제41차 FAO 총회에 'WFU 설립' 안건 상정을 위해 제33차  
수산위원회부터 의사 결정기구의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 『FAO 세계수산대학』 의제가 『FAO 제33차 수산위원회』 단독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될 방안으로,
  - 제33차 수산위원회 전까지 한국과 사무국이 해당 의제를 수산위에서 결의를 할 사안임에 합의하거나,
  - 제33차 수산위 개회 시점에 결의를 논의할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시, 회의  
초반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사무국이 제안하였음

##### 3. 향후 계획

- 2018년 4월에 『FAO 제33차 수산위원회 제8차 의장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

# 3

## 국제세미나-ROK-USA JPA '17 JPA 한-미 IUU 어업근절 워크숍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17 JPA 한-미 IUU 어업근절 워크숍  
2017 NOAA-MOF (JPA) Project on Combating IUU and MCS
- 기간/장소 : 2017.5.8.~5.12. NOAA 서부지역센터, 미국 시애틀

####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동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민안전처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경찰청 외사수사과,  
환경정의재단,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 회의결과

#### 한-미 워크숍 결과 및 협력 방안 합의

- 한-미 양국은 이번 IUU 어업 근절 워크숍에서 논의한 전략적 협력 방안들을 통한 지속적인 공조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
- 2-3년마다 번갈아 주최국으로 워크숍 개최에 동의
- (1)지역수산기구 IUU 어업 확인 선박, (2)IUU 어업 의심 선박, (3)IUU 관련 수사에 한-미 양측의 국가적 이익, 관련성,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국의 합법성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련자 정보 등의 수사 정보 제공에 동의
- 대한민국 정부와 NOAA OLE 간의 상호 수사 협조에 동의
- NOAA OLE(파트너십 관계의 부처들 포함)는 수사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또한 성공적인 수사 사례들을 대한민국 해경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수산관련 집행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동의
- 우리 측 조업관리센터와 NOAA OLE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MCS 전문 교육 커리큘럼 고안에 상호 협조함에 동의
  - IUU 조업 근절을 위한 위성 및 신기술 차용
  - 국제적 수준의 MCS 기술

# 4

##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이탈리아 양자 심포지엄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이탈리아 양자 심포지엄  
Kor-Ita Bilateral Symposium on Sustainable Fishery
- 기간/장소 : 2017.11.29.~11.30. 대한민국 부산
- 좌장 : Mr. Hanlim Lee(한국), Mr. Francesco Regoli(이탈리아)

#### 2. 참석규모

- 이탈리아 측 :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Francesco Canganella 과학기술담당관, CONISMA\* 관계자 등 10명  
\* 이탈리아 국립 해양과학대학 컨소시엄(Consorzio Nazionale Interuniversitario per le Scienze del Mare)
- 우리 측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부경대학교(WFU),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40명

### II.

### 회의결과

#### 1. 심포지엄

- (인사 말씀) 공동 심포지엄의 개최 측인 우리 측에서 개회사, CONISMA 측에서 축사(주한대사관, CONISMA 대표)를 각각 진행

개회사 (이상고 교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본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에 감사
축사 I (Francesco canganella)	한국은 WFU 설립 등 수산업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진 국가로, 한-이탈리아 간 학계의 교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바람
축사 II (Francesco Regoli)	한-이탈리아 간 공동심포지엄 및 MOU 체결을 계기로 수산분야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하며, 부경대학교와의 과학협력 또한 기대됨



- (MOU 교환) 한–이탈리아 대표는 국립부경대학교와 CONISMA 간 MOU가 체결되었음을 발표하며, MOU를 상호 교환



- (주제발표) 한–이탈리아 측 각각 6명의 과학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을 위한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 주제 발표

우리 측(6人)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유전학적 접근(우리나라, 중국 연안), 해양보호구역(MPA), 자원평가시스템을 발표하고 수산양식산업 혁신 전략이행을 소개
이탈리아 측(6人)	해양자원 조사, 이용과 관리,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접근에 대한 발표와 지중해 포유류 및 수산업 상호 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수중 음향학 기술 소개 등 발표

## 2. 기념 오찬 및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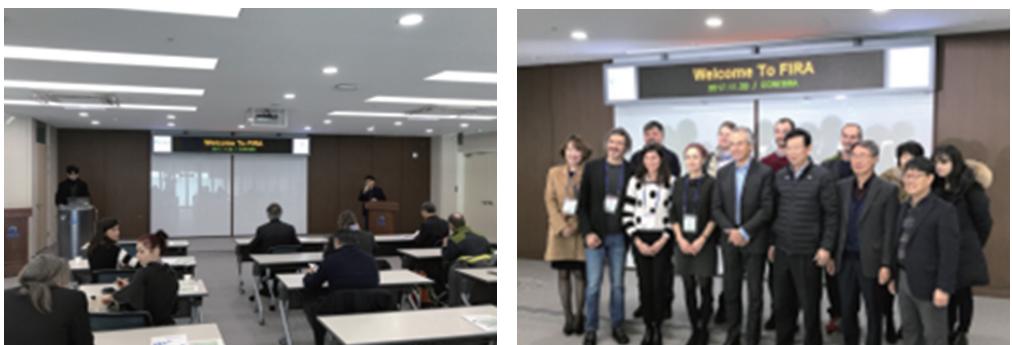
- (기념 오찬) 한–이탈리아 측 심포지엄 참석자(약 60여 명)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기념오찬(퓨전한식) 및 커피브레이크 제공
- (환영 만찬) 이탈리아 측 초청자를 환영하기 위한 양측 공식 환영만찬을 개최하여, 양측의 수산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 논의

환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측은 이번 심포지엄 및 MOU 체결을 계기로 수산과학 협력이 강화될수록 학생 및 연구 협력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노력해야 함에 공감대 형성</li> <li>이탈리아 측은 KIOST와도 MOU 체결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양식산업 및 기술에도 관심이 많으며 협력을 요청</li> </ul>
------	--

### 3. 기관 방문 및 양자회의

- (기관 방문) 이탈리아 측에서 방문을 희망한 FIRA와 FMC에서 기관별 업무소개를 받고, 시설 견학 및 관심분야 토론 실시
  - (FIRA) 이 측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며, 담당자인 최용우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FIRA와의 추후 협력을 요청

[ 수산자원관리공단 방문 ]



- (FMC) 시공간적 행동 기록과 어획노력 패턴 분석 관련 추적 장치에 대해 발표한 이 측 연구원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교, Lorenzo D'Andre)이 조업감시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

[ 조업감시센터 방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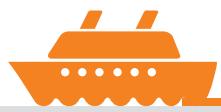


- (양자 회의) 한–이탈리아(부경대–CONISMA) 간 수산협력을 구체화하고 MOU 이행을 위한 양자 간 실무회의를 개최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측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구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기술 등 공동연구 활동분야 육성에 합의</li><li>• 이 측은 2022년 기한으로 수산과학 협력을 위한 기금 조성, Horizon 2020*에 부경대 참여를 제안하여 양측이 검토키로 함</li></ul> <p>*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젝트로 약 800억 유로 조달 목표</p>
------	--

#### [ 한–이탈리아 간 양자 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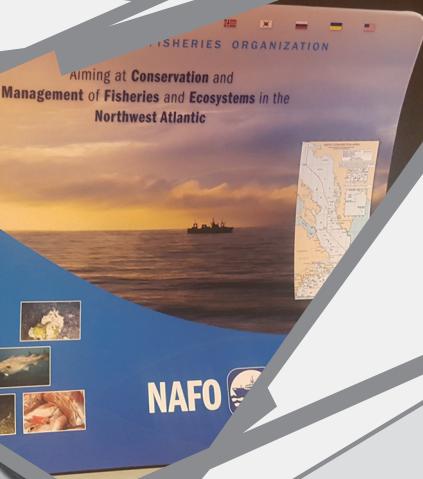




##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4차 당사국 회의	30
2.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	34
3.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3.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특별회의	40
3.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3차 기술이행위원회	44
3.3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특별회의	47
4.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9차 연례회의	50
5.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4차 연례회의	53





# 1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4차 당사국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4차 당사국 회의  
4<sup>th</sup>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 기간/장소 : '17.6.23.~6.30. 모리셔스 플릭앤플락
- 의장 : (이행위원회) Mr. Dominique PERSON(프랑스 레위니옹)  
(당사국 회의) Mr. Kristofer DU RIETZ(EU)

####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50여 명
  - \* 대한민국, 호주, 프랑스, 일본, 쿠아일랜드, 모리셔스, EU, 태국(세이셸 불참)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해외수산협력센터, 인성실업

### II.

### 주요 논의결과

#### 1. 이행위원회

-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5개 중 3개(조업활동 통제, 조업감시, 항만국 검색) 채택

#### 제안서 논의 결과

제안서명 (제안주체)	주요 내용	논의 결과
조업활동 통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업활동 통제를 위한 회원국 간, 사무국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li><li>협약 수역 내 해상 전재의 금지</li><li>어선 내 유효한 등록문서 비치, 선박 식별의 용이성 확보</li><li>어구 분실 방지 노력 및 분실 시 사무국에 보고, 폐기 어구의 회수</li><li>허가받은 과학 옵서버 승선 및 대체재 혹은 보완재로써의 전자감시시스템 설치 권장</li><li>협약 수역 내 무허가 어선 발견 시 즉시 보고</li></ul>	<p>수정 가결</p> <p>* 해상전재 금지 삭제 후 채택 (해상전재를 허용하되, 사전 전재하기, 관련 정보 홈페이지 게재 및 기록의 검증 규정 신설)</p> <p>* 전자감시시스템이 인간 옵서버를 '대체' 가능하다는 표현 삭제 후 채택</p>



제안서명 (제안주체)	주요 내용	논의 결과
조업감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획일지 기록 및 데이터 사무국에 제출(조업완료 후 30일 이내), 기국의 FMC와 공유</li> <li>분기별 어획량 사무국 보고(조업한 분기로부터 30일 이내)</li> <li>2시간마다 VMS 위치 전송,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장치 결함 시 조업 불가 및 30일 이내 수리 (이 경우, 매일 1회 다른 수단을 통한 정보 전송)</li> <li>지정된 항구에서만 입항전재, 사전 전재허가 신청 (24시간 전), 전재 관련 세부사항을 매년 사무국에 보고</li> </ul>	<p>수정 가결</p> <p>* 장치 고장 시, 다른 수단(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4시간마다 VMS 위치 전송</p>
항만국 검색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국들은 입항 가능 항구를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li> <li>입항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들은 48시간 전에 입항허가를 요청하며, IUU어업 협의 어선의 경우, 입항 거부(예외적 입항 시, 항만서비스 이용 제한)</li> <li>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한 검색 실시(신분증 패용), 합법적 조업활동 보장, 검색결과의 서면보고(기국, 사무국)</li> <li>기국은 항만국 검색에 협조 의무를 가짐, IUU어업 협의 어선의 경우 항만국에 검색 요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속한 조치(실시 후 사무국에 보고)</li> </ul>	<p>수정 가결</p> <p>* FAO 항만국 조치협정 제11조 제4항, 제5항의 내용(입항 거부된 선박에 대한 거부의 근거가 부적절한 경우, 해당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통보) 추가</p>
해상검색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국에 검색계획, 검색관 및 검색선에 대한 정보 등을 통지(검색 시작 30일 이전)</li> <li>검색팀은 최대 4명으로 구성, 척당 4시간 이내, 합법적 조업활동 보장, 검색보고서 작성 및 제출(15일 이내), 선장에게 보고서 사본 제공</li> <li>위반 혐의 발견 시, 사무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국에 통보(15일 이내)</li> </ul>	<p>부결</p> <p>* 자체 해상검색 실시 등의 이유로 추후 재논의 예정</p>
시험조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조사계획 및 해당 선박정보를 사무국에 제공</li> <li>조사계획의 선박 내 비치 및 변경 시 사무국에 통지</li> <li>상업적 조업 금지 및 조사 데이터의 사무국 제출</li> </ul>	<p>부결</p> <p>* 기밀성 확보 어려움 등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추후 재논의 예정</p>

- 대형유자망 및 심해 자망어업 관련 보존관리조치(CMM 2016/05)에 대한 국가별 이행보고서 검토
  -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형 유자망을 금지하며, 모든 수역에서 자망어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
- IUU선박 목록 초안 검토
  - 회원국들은 무국적 선박 및 미등록 선박 발견 시, 자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CMM 2016/04 제5항, CMM 2016/07 제8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원국의 보고가 전무하여 동 회의에서 IUU선박 목록은 작성하지 않음

## 2. 당사국 회의

- 국가별 CMM 이행에 대한 평가 체계 제안서 및 타기구(CCAMLR)와의 합의서 논의

제안서명 (제안주체)	주요 내용	논의 결과
국가별 CMM 이행에 대한 평가 체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단계에 걸친 이행평가 절차 마련</li><li>• 국가별 이행상태를 이행, 불이행, 상당한 불이행, 심각한/지속적 불이행으로 분류하여 평가</li><li>• 불이행시 대응방안 마련(문제 검토, 관련국에 해당내용 이행 촉구, 협력 및 역량 개발 지원, 제도적 조치 시행 등)</li></ul>	부결 <small>*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small>
CCAMLR와의 합의서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자 간의 자료 및 정보 교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 강구, 세부적 절차 마련</li></ul>	가결

- 보존관리조치(CMM 2016/01, 2016/07) 개정

- 저층어업 영향평가 적용범위 설정

– 저층어업 영향평가 적용범위를 신규조업으로 한정한다는 제2차 과학위('17.3.)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동 당사국 회의에서 신규조업의 범위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아\* 추후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 상업적 조업만 포함(일본) vs. 모든 조업을 포함(호주, EU, 프랑스 등)

- 저층어업 잠정 보존관리조치(CMM 2016/01) 개정

– 일본이 제안한 '17.7월 이후 가입국과 기존 회원국의 저층어업 관련 의무사항을 구분\*할 것에 합의



\* (기존 회원국) 조업일수가 40일 이상인 회원국만 어획량 · 노력량 제한(과거 조업연도 평균수준으로 제한 및 신규 어장 조업 금지). 데이터 제출 및 저층어업영향평가서(BFIA) 제출  
(신규 가입국) 조업일수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

- 조업허가 보존관리조치(CMM 2016/07) 개정

- 동 조치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선박 관련 정보(선박명, IMO 번호 등)에 EU가 제안한 어창 도면과 면적 항목을 추가

- '18년도 예산안 및 분담금 책정, 차기 회의 개최지 지정**

- ('18년도 예산)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4,855.08 EUR 책정
    - (분담금) 41,387.95 EUR(약 5,400만 원. 회원국 추가 가입(태국)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1% 감소)
    - (차기 회의 개최지) 태국(이행위('18.6.21.~6.23.), 당시국 회의(6.25.~6.29.))

# 2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  
3<sup>rd</sup> Annual Session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17.7.10.~7.15. 삿포로(일본)
- 의장 : (기술이행위) Dr. Robert Day(캐나다)  
(연례회의, 재정행정위) Mr. Kenji Kagawa(일본)

####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00여 명
  - \* 대한민국, 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러시아, 미국, 바누아투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꽁치봉수망위원회



## II. 주요 논의결과

### 1. 기술이행위원회

#### ■ 개별 회원국 VMS 현황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 통합 VMS 체계 마련을 위해 실시한 프랑스 CLS사의 연구 용역 결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각 회원국 간 VMS의 호환성이 높아 통합 VMS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통합 VMS 구축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중국, 일본) 각국별로 VMS가 구축되어 기국 FMC에 자료를 전송하는 바, 통합 VMS의 구축의 목적 및 실효성 의문  
(대만) 통합 VMS 구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기

#### ■ NPFC 선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상황 보고

- 선박등록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6-01)의 기준 선박 등록 방식\*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NPFC 선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상황을 사무국이 보고하였고 모든 회원국들은 선박등록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해 동 방식의 구축을 적극 지지함

\* 기준 방식은 기국이 선박정보를 엑셀파일로 사무국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사무국에 엑셀파일로 제출

#### ■ IUU 선박 목록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6-02) 개정

- 일본이 제출한 IUU 혐의 선박 목록(러 국적 2척, 중국 국적 66척)을 검토한 결과, 기국(러시아 및 중국)의 소명\*을 반영하여 이들 중 16척만 잠정 IUU선박 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

\* (중국) 일본 측이 제시한 선박 가운데 대부분은 과거 제재를 받았거나, 정부로부터 합법적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어선임을 설명  
(러시아) 해당 선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음을 설명

#### ■ 임시 전재 절차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6-03) 개정

- 소형어선의 경우 IMO번호\* 발급이 어렵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IMO번호는 “적절한 경우(where applicable)” 기입하도록 개정

\* '13년 IMO 결의에 따라 1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 IMO번호 발급

### 최종 채택된 전재보고 양식

#### NPFC Transshipment Information

Participant's name :

Calendar Year	Information on Catching/Unloading Vessel			
	Name	IMO number (where applicable)	Flag	Authorization NO.
	Information on Carrier/Receiving Vessel			
	Name	IMO number (where applicable)	Flag	Register Observer (Yes/No)
	Information on Transshipment			
	Date	CA	NCA	Ports
	Information on Species			
	Name (FAO code)	Product Form (FAO code)		Weight (MT)

\* Suggested additions are in red

#### ■ 저층어업 및 북서태평양 취약생태계 보호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6-05) 검토

- 우리나라 트롤어선이 '13년 조업이 금지된 C-H 해산(sea mount)수역에서 조업을 한 것이 일본으로부터 지적됨
  - 이에 우리나라는 동 조업은 일회성,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소명하고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언급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 ■ 저층어업 및 북동태평양 취약생태계(VME) 보호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6-06) 개정

- 동 CMM에 명시되어 있는 저층어업 어획방법 4가지(저층트롤, 저층자망, 저연승, 통발)를 2가지(저연승, 통발)로 국한할 것에 합의



## 2. 연례회의

### ■ 꽁치 보존관리조치(CMM 2017-08) 채택

- 기존 꽁치 보존관리조치(CMM 15-02) 개정 및 꽁치 선박 척수 동결
    - 일본이 국가별 꽁치 어획 퀘터제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 되었고 선박 척수는 과거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
    - 동 조치는 1년간 유효하며, '18년 연례회의 시 재검토 예정
- \* 회원국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결여, 특정국에 어획퀘터 편중(일본에 약 43% 배정), 역사적 조업실적 반영 불충분 등으로 인해 다수 회원국들이 반대

국가별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01~'16)

(단위 : 톤)

연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01	5,401(20,869)	–	17,149(39,750)	0(269,978)	0(34,616)
'02	10,676(20,088)	–	38,063(51,283)	0(205,282)	0(36,602)
'03	20,146(31,219)	–	84,443(91,515)	0(264,801)	0(57,646)
'04	18,082(22,943)	–	60,723(60,832)	0(204,371)	8,300(83,735)
'05	31,175(40,509)	–	101,939(111,491)	0(234,451)	34,100(87,602)
'06	3,303(12,009)	–	60,578	0(244,585)	17,900(77,691)
'07	7,625(16,976)	–	82,362(87,277)	267(296,523)	15,700(110,692)
'08	19,004(30,212)	–	133,763(139,514)	1,124(354,727)	16,200(93,866)
'09	10,008(22,001)	–	98,177(104,219)	722(310,743)	700(37,693)
'10	9,031(21,360)	–	157,666(165,692)	2,859(207,489)	2,100(31,686)
'11	14,061(18,068)	–	137,089(160,532)	1,208(215,353)	1,616(62,064)
'12	7,068(13,961)	2,014	141,066(161,514)	1,228(221,469)	1,494(63,105)
'13	17,666(20,055)	23,191	159,568(182,619)	8,085(149,204)	229(52,433)
'14	16,129(23,431)	76,129	210,355(229,937)	5,784(227,520)	7,219(71,254)
'15	5,466(11,204)	48,503	152,271(152,271)	31,534(116,243)	4,641(24,047)
'16	9,883(16,828)	63,016	145,531	25,274(114,222)	2,463(14,623)

\* 괄호( )는 EEZ 수역의 조업까지 포함한 전체 어획량(한국의 경우, 러·일 EEZ)

### 국가별 북태평양 꽁치 선박 척수('01~'16)

(단위 : 척)

연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01	26	–	44(69)	0(379)	0(38)
'02	21	–	56(76)	0(370)	0(50)
'03	19	–	67(73)	0(324)	0(48)
'04	19	–	67(68)	0(314)	14(51)
'05	18	–	67(75)	0(288)	16(64)
'06	13	–	65	0(258)	11(60)
'07	15	–	67(72)	1(248)	10(67)
'08	16	–	68(71)	2(241)	12(61)
'09	17	–	72(78)	4(243)	12(63)
'10	17	–	72(77)	19(255)	8(54)
'11	15	–	74(88)	12(226)	14(65)
'12	13	2	85(98)	22(240)	16(74)
'13	14	19	91(106)	47(264)	21(87)
'14	13	44	91(102)	32(242)	15(77)
'15	13	42	90	72(280)	15(63)
'16	14	60	91	59(268)	6(37)

\* 괄호( )는 EEZ수역의 조업 선박까지 포함한 전체 선박 척수

#### ■ 고등어 보존관리조치 채택(CMM 2017-07)

- 기존 고등어 보존관리조치(CMM 2016-07) 개정 및 고등어 선박 척수 동결

– 일본은 '17.1.1일부터 고등어 자원평가 완료 시까지 고등어 조업 허가 선박 척수가 현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과거 최대 조업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

#### ■ 북방돛돔, 빛금눈돔 모라토리엄 제안 미합의

- 미국은 북방돛돔과 빛금눈돔의 악화된 자원상태를 감안하여 보존관리조치(CMM)가 수립될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보존관리조치로서 공식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



### 3. 재정행정위원회

- '17~'18년 예산안 합의, '18년도 한국의 분담금은 9,186,637 JPY(약 9,200만 원. 전년 대비 4.6% 증가)

	예산안	분담금(한국)
'17년	142,974,002 JPY(약 14억 3,000만 원)	8,753,947 JPY(약 8,800만 원)
'18년	157,271,403 JPY(약 15억 2,000만 원)	9,186,637 JPY(약 9,200만 원)
증가율	6.3%	4.6%

# 3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3-1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특별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열대다량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특별회의  
Intersessional Meeting to Progress the Draft Bridging Measure for Tropical Tunas
- 기간/장소 : 2017.8.22.~8.24. 미국 하와이
- 의장 : Ms. Rhea Moss-Christian(미크로네시아)

##### 2. 참석규모

- 참가국 : 24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50명
  - \* 호주,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제도,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업계 자문단(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한성기업)



## II. 주요 논의결과

### 1. 선망선 FAD 규제 조치 재검토 논의

- 현행 FAD 규제 조치(FAD Set 금지 4개월 및 공해상 FAD 조업 금지)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 대립
  - (논의결과) 나우루협정당사국(PNA, Parties to Nauru Agreement), 미국, 일본 및 비PNA국가들의 제안을 과학위원회가 현행조치와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키로 합의

구분	제안주체	주요 내용
옵션 1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월 FAD 금지 또는 3개월 금지 + FAD Set 제한</li> <li>• 공해 연중 FAD 금지(키리바시 예외)</li> </ul>
옵션 2	P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FAD 금지 및 공해 연중 FAD 금지(키리바시 예외)</li> <li>• 3개월 FAD 금지 및 공해 5개월 FAD 금지</li> </ul>
옵션 3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D Set 횟수 제한(미국이 추후 제시 예정)</li> <li>• 과학위에 횟수 제한 계산 요청</li> </ul>
옵션 4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월 FAD 금지</li> <li>• 4개월 FAD 금지 및 공해 연중 FAD 금지(예외 없음)</li> <li>• 척당 500톤 이상 눈다랑어 어획하는 비SIDS국은 5개월 FAD 금지</li> <li>• FAD 개수 350개 제한(과학위 검토 필요)</li> </ul>
옵션 5	비P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EZ 기반 FAD Set 제한</li> <li>• 공해상 SIDS에 대한 공평한 FAD Set 횟수 배분</li> </ul>

### 2. FAD 정의 규정 논의

- FAD 정의\* 규정 도입 제안(한국·일본) 미합의
  - 현재의 FAD 정의\*가 광범위하여 사소한 부유물질도 FAD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존조치 불이행 및 선박과 옵서버 간 마찰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나라 FAD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
- \* 어류가 몰려들 수 있는 수면 위 또는 수면 부근에 떠있는 부표, 부유물, 그물, 띠, 플라스틱, 대나무, 통나무와 고래상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크기, 배치 여부, 살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 또는 모든 물체 조합
- (논의 결과) PNA가 CMM 2009-02와 자국법에 이미 FAD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과 옵서버 간의 마찰은 옵서버 기록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FAD 정의 재정립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함(소규모 작업반 구성을 통해 추가적 논의 예정)

### 3. 선망선 노력량 통제 논의

- EEZ뿐 아니라 공해상 선망선 노력량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PNA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조업국의 입장\*\* 및 비PNA국가의 입장\*\*\*이 대립

– (논의 결과)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추후 지속 논의키로 함

\* (PNA) EEZ내 조업일수관리제도(VDS)를 유지하고, 공해 조업일수는 분기별 배분하여 올림픽 방식으로 하되, 남위 20도 이남 공해는 조업 금지

\*\* (한국) 참치는 고도회유성 어종이므로 EEZ와 공해의 구분 없이 협약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업일수 관리를 주장하고, 특히, 현 공해상 조업일수 제한 규정이 포켓공해가 폐쇄된 이후의 어획노력만을 반영하는 등 불공평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한국 207일)

(일본) 공해조업일수를 5,571일로 할당하여 올림픽 방식으로 관리하되, 연안국도 특정 일수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제한(기존 조업국(현행) 할당 일수 2,311일 + 연안국('10~'15년 중 최고일) 3,260일)

(미국) EEZ와 공해 구분 없이 전체 조업일수를 통합하여 관리하자고 주장하며, 특히 공해 올림픽 방식은 선단 간 조업경쟁 유발로 자원보전에 유해하고 선원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 (쿡, 피지 등 비PNA) 자체 EEZ 조업일수를 산정하고 이 중 일부를 공해에서 사용토록 전배할 것을 주장

### 4. 연승선 눈다랑어 조치 논의

- PNA는 연승선 눈다랑어\*에도 EEZ내 조업일수제도(VDS, Vessel Day Scheme)를 적용하고 공해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업일수 관리조치(global effort limit)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업국들이 강력 반대

– (논의 결과)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추후 지속 논의키로 함

\* 현재 연승선 눈다랑어는 EEZ/공해 구분 없이 쿼터제로 관리가 되나, PNA안은 PNA의 EEZ내 VDS 미구매시 공해상 쿼터가 삭감됨

\*\* 우리나라는 눈다랑어 자원보존에 대한 VDS 제도의 효용성, 연안국의 새로운 조치가 기준 이행 중인 조치를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의 어획관리 시스템 등을 설명하며 PNA안의 수용 불가 입장 강조

### 5. MCS 조치 논의

- PNA는 연승 옵서버 커버리지 20%로 상향조정, 연승선 해상 전재금지, 어획물 보유 대상에 2개 부수어종(참치방어, 만새기) 추가 등을 주장



– (논의 결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반대\*로 미합의

\* (해상전재 금지) 현재 시 옵서버 승선률 100%가 요구되므로 해상전재금지의 필요성 의문 및 연승의 조업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행가능성 의문  
(옵서버 커버리지 상향) 연승선의 경우 조업 특성상 옵서버 확보가 어려워 커버리지 상향 어려움  
(침치방어, 만세기 어획률 전량 보유) 등 조치는 열대다량어 보존조치이므로 타여종을 어획률 보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6. 향후 일정 논의

- 금번에 논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rev5)을 토대로 제14차 연례회의 개최 이전까지 각국 간 협의 추진 및 과학위원회 분석을 추진하고 제14차 연례회의 시작 직전일('17.12.1)에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금번 수정안(rev5)에 대해 재논의 후 총회로 제출키로 합의

### 3-2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3차 기술이행위원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3차 기술이행위원회  
13<sup>th</sup> Regular Session of the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 기간/장소 : 2017.9.26.~10.3.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 의장 : Ms. Alexa Cole(미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26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50명
  - \* 호주,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제도,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업계자문단(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한성기업)

### II. 주요 논의결과

#### 1. 신규 잠정 IUU 선박 목록 검토

선박 및 기국명	신고국	협의	검토 결과
SUI YUAN YU 30 (중국)	쿡제도	'16.5.20~21일간 쿡제도 EEZ 내 무허가 조업 협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 하여 미등재
DA YANG 15 (중국)	뉴질랜드	'16년 무허가 조업, 남방참다랑어 어획물 세탁, 상어 조업 미보고, VMS 미작동, 바닷새 경감조치 미이행	양자 협의 결과, 중국이 해당 선박에 처벌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어 미등재
DA YANG 16 (중국)	뉴질랜드	상동	상동
YUANDA 19 (중국)	호주	남방참다랑어 어획물 세탁	상동



## 2. WCPFC 보존조치 이행현황('16) 평가

### ■ '16년 지적된 3건의 상어 어획 위반 혐의 소명

- 선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의 선망선은 WCPFC 보존조치를 위반하면서 상어를 어획할 유인\*이 없음과 8월에 공식적으로 옵서버 리포트를 요청하였으나 회신 받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정황자료가 부족하여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려움을 설명
  - (평가 결과) 기국조사상태(Flag State Investigation)

\*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2항 8호에 따르면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상 10억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 '16년 지적된 1건의 옵서버 임무수행 방해 혐의 소명

- 조사 결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더욱 진전된 조사를 수행하겠음을 언급
  - (평가 결과) 기국조사상태(Flag State Investigation)

### ■ '16년 지적된 공해조업일수 초과 사례 소명

- 우리나라 조업감시센터에서 집계한 공해조업일수(205일)와 과학위원회가 산정한 조업일수(222일) 간 데이터 차이가 존재함을 설명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업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과학위 자료와 오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한 조업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계산 방식 공유 등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
  - (평가 결과) 불이행(Compliant)

### ■ '16년 지적된 1건의 전재 사전보고 지연 사례 소명

- 해당 선박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었음을 설명
  - (평가 결과) 이행(Compliant)

### ■ '16년 지적된 태평양참다랑어 대형어 초과어획\* 사례 소명

- 한국은 대형어 쿼터 초과 어획분을 '17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47톤씩 분할 차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WCPFC 보존조치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 (평가 결과) 불이행(Non-compliant)

\* 한국은 2016년 3월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471톤을 어획하였음. 당시 태평양참다랑어 보존조치에 따르면 회원국은 30kg 이상 참다랑어 어획량이 '02~'04년 연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한국은 기준연도의 어획실적이 0톤이었음

### 3. 옵서버 행동규칙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제정(안) 제안서 발표(한국)

- (제안 배경) 옵서버 주취폭력 등 부적절행위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옵서버 행동강령을 보존 관리조치로 제정함으로써 옵서버가 항차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동 규정 수행 여부를 보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체크리스트)
- (논의 결과) 회원국들이 동 제안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검토 후 11월 중 의견을 회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제14차 연례회의('17.12./ 필리핀 마닐라) 전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옵서버 행동 규칙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주요내용

##### 가. 승선 전

- 양호한 건강 상태 유지 및 주류/기호성 의약품류 섭취 및 반입 금지
- 선박 측에서 요구한 승선 시각 엄수

##### 나. 승선 중

- 신분증 제시 및 제반 양식 성실 작성
- 지정된 장소에 물품 정리 및 보관

##### 다. 선상 임무 수행 중

- 독립성 유지 및 금품 요구 금지
- 선박 내부 안전 규정 및 기국의 관련 법규와 문화 존중
- 선장 및 선원 사생활 및 사유 물품 존중
- 선장 및 선원을 향한 폭력적 행동, 위협, 협박, 육설 등 불쾌한 언행 금지
-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 외부 유출 금지
- 개인위생 철저 유지 및 선박 내 청정 공간에 오염된 의류 착용 상태로 출입 금지

##### 라. 하선 후

- 선장의 지시가 있을 시까지 하선 자제
- 항만, 세관, 출입국 허가 당국의 지시 준수

##### 마. 상기 사항 위반 시 사안의 경증에 따라 옵서버에 대한 제제조치 실시

(옵서버 자격 정지 또는 박탈, 피해 사항에 대한 배상 등)

##### 바. 선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후 기국 및 옵서버 송출국에 제출

**3-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특별회의****I.****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연례회의  
14<sup>th</sup> Regular Session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7.12.3.~12.7. 필리핀 마닐라
- 의장 : Ms. Rhea Moss-Christian(미크로네시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26개 회원국\* 대표, 협력적 비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500명
  - \* 호주,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나우루, 나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쿠제도,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U,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업계자문단(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고역, 한성기업)

**II.****주요 논의결과****1. 열대다량어 보존관리조치 임시개정안(CMM 2017-01) 채택****■ 공해상 선망선 어류유집장치(FAD, Fish Aggregating Devices) 사용 금지 기간 개정**

- (논의 결과) 전 수역 FAD 금어기 3개월을 유지하되\*, 공해 연중 FAD 금지에서 공해 2개월\*\* FAD 금지로 개정하여 선망선 FAD 사용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추가적인 FAD 규제\*\*\*는 삭제

\* 단, 조업선, 운반선, 지원선도 모두 적용

\*\* 4~5월 또는 11~12월 중 선택, 키리바시 국적선 및 필리핀 예외

\*\*\* 추가적으로 1개월 금지 또는 연중 FAD 세트 개수 제한 중 선택

**■ 눈다량어 신규 자원평가 결과에 근거한 연승선 눈다량어 어획쿼터 재설정**

- (논의 결과) 눈다량어 어획쿼터 소폭 상향 조정(한국, 1,073톤 증가)

\* 전체 60,355톤 중 한국은 13,942톤으로 전년대비 1,073톤 증가

### ■ 연승선 조업일수 제도(VDS, Vessel Day Scheme) 내용 본문 삭제

- (논의 결과) 연안국이 자국의 EEZ 내에서 도입 및 운영하는 연승선 VDS를 본문에 삽입할 것을 주장하며 연승선 통제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반대하여 동 내용을 본문에서 삭제 후 채택

#### 열대다량어 보존관리조치 임시개정안(CMM 2017-01) 주요 내용

- **눈다량어, 황다량어 및 가다량어 어획 전략 및 잠정 목표**
  - 눈다량어 : 목표기준점이 합의될 때까지, 눈다량어 산란자원량 고갈률(SB/SBF=0)은 2012-2015년 평균 SB/SBF=0 또는 그 이상을 유지
  - 가다량어 : 평균 산란자원량은 CMM2015-06에 따라 채택된 비 조업 시 산란자원량의 50%인 잠정 목표기준점 수준으로 관리
  - 황다량어 : 목표기준점이 합의될 때까지, 황다량어 산란자원량 고갈률(SB/SBF=0)은 2012-2015년 평균 SB/SBF=0 또는 그 이상을 유지
- **선망선 FAD 세트 관리**
  - 매년 7월 1일 00:01시(UTC)부터 9월 30일 23:59시(UTC)까지 3개월(7,8,9월)간, 북위20도와 남위 20도 사이의 바다적 경제 수역과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망선, 지원선 및 기타 선망선을 지원하는 선박의 FAD의 설치, 관리 및 FAD 이용 조업을 금지
  - 1년 중 추가적으로 연속 2개월간 FAD의 설치, 관리 및 FAD 이용 조업을 금지, 각 CCM은 자국 선단에 적용할 2018년 공해 FAD 세트 금여기를 4-5월, 10-11월 중 선택하고 그 결정을 2018년 3월 1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키리바시 국적 선박 및 필리핀 선박 제외)
- **전자 부표**
  - 자국의 각 선망선이 어느 한 시점에 해양에 띄워 놓은 활성화된 전자 부표를 장착한 부유 어류유집장치(FAD)의 개수를 350개 미만으로 보장
- **공해 선망선 노력량 통제**
  - 북위20도와 남위20도 사이의 공해상 자국 선망 노력량 수준을 부속서1 표2\*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한 (군소도서개발국 및 필리핀 예외)
    - \* 한국 : 조업일수 207일
- **연승선 눈다량어 어획 한도량**
  - 잠정 조치로서, 눈다량어 어획량 수준을 표3\*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한,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익년 한도량에서 차감
    - \* 한국 : 13,942톤

## 2. 옵서버 행동규칙에 관한 제안서(한국, 일본) 논의

- ### ■ 옵서버가 항차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보존조치로서 제정할 것을 제안
- (논의 결과) 태평양도서국 포럼(FFA,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이 자국 행동강령과의



중복, 연안국 영향평가 부족, 종교·문화 차이, 옵서버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내년도 기술이행위 작업반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 3.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초과 건 검토

- '17.3월 연근해 대형선망업계가 참다랑어 572톤 어획, 쿼터를 초과하여 WCPFC 보존 조치\* 준수를 위해 조업·위판 금지 명령(3.6, 어업정책과)

\* 보존조치에 따라 쿼터를 초과하여 어획한 참다랑어는 상업거래 금지

- 11.10일 기준 총 741.4톤(잠정)을 어획하여 70.4톤이 초과
- (논의 결과) 보존조치에 따라 금년 쿼터 초과분만큼 '18년 쿼터에서 차감

### 4. 기타 제안서 논의

제안서명(제안국)	주요 내용	논의 결과
남방날개다랑어 보존조치 및 목표 기준점 설립(FFA)	남방날개다랑어 보존조치 및 목표 기준점 수립을 통한 자원보존	부결 * 남방 날개다랑어 자원평가 이후 재논의 예정
해양오염방지 보존조치(FFA)	연안국 수역 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MARPOL 협약 비준 및 조업선의 유류, 기름, 쓰레기, 어구, 음식물 쓰레기, 오물 등 방출 금지	수정 가결 * 플라스틱 투기만 금지, 1년 유예기간 신설
항만국 조치 (EU · FFA)	전장 12미터 이상 외국어선 대상 IUU선박 입항거부 등 항만국 검색 실시	수정 가결 * 72시간 입항 전 보고 의무, 5% 의무 검색 등 삭제 후 채택
어선기록부 보존조치 개정(FFA)	사모아 조업선에 대한 어선기록부 등록 예외	가결
어획 전략계획 수정	신규 눈다랑어 자원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22년에 어획 전략계획 수정	가결
상어 보존조치 수립(EU)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등	부결 *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
바닷새 보존조치 개정(뉴지)	35미터 이하 연승선 토리라인 설치 세부규정 개정	수정 가결 * 후크실드장치 도입 권고내용 삭제, 추후 과학위 권고를 바탕으로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

# 4

##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9차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9차 연례회의  
39<sup>th</sup> Annual Meeting
- 기간/장소 : 2017.9.18.~9.22. 캐나다 몬트리올
- 수산위원회 의장 : Ms. Sylvie Lapointe(캐나다)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1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회의결과

#### 1. 수역 및 어종별 TAC 설정

- 수산위원회는 과학이사회 권고를 바탕으로 총 14개 어종의 TAC를 확정

##### 어종별 TAC 논의결과

수역별 어종	TAC(t)	권고사항
3M Cod(대구)	11,145(+)	EU의 제안에 따라 '18년 TAC는 '17년 과학위 권고에서 20% 감축한 11,145로, '19년 TAC는 '17년도 어획량의 75% 수준인 8,182톤으로 결정
3M Red fish(적어)	10,500(+)	향후 2년간 전년도 TAC 유지('18~'19년)
3NO Cod	0(-)	3개년('16~'18년)간 조업 금지
3O Red fish	20,000(-)	전년도 TAC 유지('18년도에 자원평가 예정)
3NL Red fish	14,200(-)	전년도 TAC 유지('18년도에 자원평가 예정)



수역별 어종	TAC(t)	권고사항
3LNO American plaice	0	향후 3년('18~'20년)간 적용
3LNO Yellowtail flounder (각시기자미)	22,000(−)	과학위는 전년도보다 약 7% 감축한 22,000t 권고
3NO witch flounder(기름가자미)	1,116	자원상태 악화에 따라 전년도보다 약 50% 감축 ('18년 1,116t, '19년 1,175t)
3NO White Hak(흰긴수염대구)	1,000(−)	전년도 TAC 유지('18년도에 자원평가 예정)
3NO Capelin(열빙어)	0(−)	'15년 결정한 TAC('16~'18년) 유지
3LNOCapelin Thorny skate(흉어)	7,000(−)	전년도 TAC 유지('18년도에 자원평가 예정)
중해역2,3KLMN Greenland halibut (오가자미)	10,966(−)	전년도 TAC 유지('18년도에 자원평가 예정)
중해역3.4 Squid(오징어)	34,000(−)	향후 2년('18~'19년) 간 적용
3LNO(새우)	0(−)	과학이사회 권고에 따라 기존 모라토리엄 유지

## 2. '18년 우리나라 쿼터

- 전년 대비 '18년 어종 별 TAC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전년과 동일한 총 622톤\*의 쿼터 확보

\* 적어 169톤(소해역 3M : 69톤, 소해역 3O : 100톤), 오징어 453톤(중해역 3+4)

연도별 우리나라 쿼터		
연도	총 쿼터(톤)	어종별 쿼터(톤)
'12	755	새우 133, 오징어 453, 적어 169
'13	718	새우 96, 오징어 453, 적어 169
'14	670	새우 96, 오징어 453, 적어 169
'15	622	새우 48, 오징어 453, 적어 169
'16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17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18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 3. 폐어류 감축 및 균절 정책 방안 재고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과학위원회와 작업반이 각각 폐어 감축 및 균절 방안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회원국들의 합의로 결정

### 4. 뉴잉글랜드 해산 수역 폐쇄 방안

- (미국, 캐나다) 2014년 과학위원회가 NAFO 규제수역 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해산과 코너 라이즈 해산 주위의 해산 보호수역의 확대를 권고한바, 미국과 캐나다는 해당 조업금지수역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의 합의로 결정

### 5. 뜬돌(Alfonsino) 보존관리조치 방안 재고

- (노르웨이) 뜬돌에 대한 강력한 보존관리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년 다시 진행하는데 합의

### 6. 어획 측량 권고 위원회(CESAG) 발족

-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재고하여 기존 어획 보고 작업반(WG-CR)과 어획량 권고 위원회(CDAG)를 어획 측량 권고 위원회(CESAG)로 통합 결정

# 5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4차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4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CCSBT 24<sup>th</sup> Annual Meeting
- 기간/장소 : '17.10.5~10.1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EU, 호주, 대만, 남아공,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CCSBT 8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등 약 100여 명
- 대표단 규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센터 외 4명

### II. 주요 논의결과

#### 1. 어획증명제도(CDS) 개정안 : 미합의

- (논의 배경) 현행 어획증명제도의 개선을 위해 '15년부터 논의
  - 주요 내용 : 미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계체량 확인 후 CDS 승인) 사무국은 제도상의 허점\*을 차단코자 하역하여 계체량 확인 후 CDS 문서를 승인도록 제안
- \* 현재는 기국 정부가 아닌 현지 수입업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재 이후 양륙 시까지 발생 가능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

#### CDS문서 승인 시점 변경안

현행	SBT어획 → 운반선 전재 → (CDS문서 승인) → 양륙·검량 → 수입통관
개정안	SBT어획 → 운반선 전재 → 양륙·검량 → (CDS문서 승인) → 수입통관

- ⇒ (한국) 어획 후 대부분 제3국(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므로 개정안 시행 시, 추가비용 및 시간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부담으로 수용 곤란
- (CDS문서 승인권자 요건 강화) 일본은 민간인에게 권한 위임 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로 위임대상을 한정할 것을 제안
  - ⇒ (호주, 뉴질랜드) 어획물 하역 및 이송이 원거리에서 자주 발생하고, 업계 전문가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함을 들어 반대
  - (개정안 발효 시기) ’18.1.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회원국별 조업기간이 상이하여 경과조치 부여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논의결과) 미합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진전 없이 회기간에 관련 국가 및 사무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함
    - (계체량 확인 후 CDS 승인) 우리 측은 행정업무 부담 증가와 수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반대 입장 표명
  - ⇒ (사무국과의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국은 기국의 어획량 검증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측에 추후 대안문구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 (CDS문서 승인권자 요건 강화) 일본은 ‘상업적 이해관계’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뉴질랜드 측은 행정업무 부담 증가를 들어 반대

## 2. VMS 결의안 개정안 : 미합의

- (주요내용) VMS에 대한 2가지 결의안\*을 결합하고, ICCAT나 IOTC 등 다른 RFMOS에서 시행되는 관련 내용을 추가
- \* '06년 결의안(VMS의 이행과 개발에 관한 결의안)과 '08년 결의안(CCSBT VMS의 설치에 관한 결의안)
- 회원국의 FMC는 최소 4시간 간격으로 조업선박의 위치정보를 사무국에 전송(오차범위 500m 이하, 신뢰도 99% 수준)
  - VMS 고장 시 기국에 통보 및 1개월 이내에 교체 또는 수리, 만일 동 기간 경과 시에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항구로 귀환
  - (논의결과) VMS 고장 시, ‘선박의 위치 및 활동이 확인 가능한 빈도’로 보고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견해를 반영, 차기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함
- 전재에 관한 결의 및 항구 검색에 관한 결의 개정안 : 수정 채택
- (주요 내용) 두 결의안의 적용범위 및 사전 입항신고 기한 통일



### 적용범위

구분	전재에 관한 결의	항구검색에 관한 결의
현행	남방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및 수산제품
개정안		남방참다랑어 및 수산제품

### 사전 입항신고 기한

구분	전재에 관한 결의	항구검색에 관한 결의
현행	최소 48시간 전	최소 72시간 이전
개정안	최소 72시간 이전 (단, 항구국이 수산품 종류, 어장에서 항구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별도 기한 설정 가능)	

- (논의결과) 사무국이 제시한 개정안 중, 적용범위만을 일치시키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하기로 함
    - (일본) 두 결의안의 적용대상\*이 다른 바, 이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
    - \* (항구검색에 관한 결의) RFMO회원국이면서 항구국인 국가  
(전재에 관한 결의) 전재 항구가 속한 국가이면 모두 적용 가능
    - (옵서버–BI\*) 옵서버가 사진 촬영을 통해 조업선의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자고 제안
    - \* BI(Birdlife International) : 1922년 설립된 조류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이며,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음(한국은 1960년에 가입)
- ⇒ 일본 등은 옵서버의 업무 증가로 인한 주 업무 차질 가능성 우려하여 이에 반대 입장 표명

### 3. TAC 및 국별 할당량 검토

- 제23차 연례회의('16.10. 대만)에서 결정된 TAC 및 국가별 할당량

국가명	'18~'20년 명목쿼터(톤)	'18~'20년 실질쿼터*(톤)	비율(%)
한국	1,240.5	1,240.5	7.2
일본	6,165	6,117	35.6
호주	6,165	6,165	35.6
뉴질랜드	1,088	1,088	6.3
대만	1,240.5	1,240.5	7.2
인도네시아	1,002	1,023	5.8
EU	11	11	0.1 미만
남아공	423	450	2.4
필리핀	0	0	—
연구조사용	6	6	—
비회원국용	306	306	—
합계	17,647	17,647	100

\* 전년도 연례회의에서 3년간('18~'20) 일본 측 쿼터 가운데 48톤을 각각 남아공(27톤)과 인도네시아(21톤)로 이전하기로 합의

– 이번 회의에서 전년도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의 발생 여부\* 검토 예정

\* 단, 제22차 과학위('17.8.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년도 TAC 결정 유지 권고

• (쿼터에서 차감되는 어획물) 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사망률로써, 보다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해 도입

– 제21차 연례회의('14)에서, 쿼터에서 차감되는 어획물 범위에 대한 합의\* 및 이행행동계획\*\* ('15~'18) 챕터, 국가별 이행현황 보고

\* 쿼터에서 차감되는 어획물의 범위 : 상업적 조업(목표 조업 여부 불문), 방류/폐기, 유어어업(recreational fishing), 관습적/전통적 어업, 생계형 어업

\*\* 회원국별로 3년간('15~'17년)의 연구를 거쳐 '18년부터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방류/폐기량 등에 대해서도 쿼터 차감



- (연구목적 쿼터 설정) 전년도 연례회의에서 6톤 이내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에는 5.2톤 설정(유전자 TAG 프로젝트용 3톤, 호주의 SBT 건강평가 연구용 1.2톤, 일본의 미성어 SBT 연구용 1톤)

### ■ 논의결과

- (TAC 및 국가별 할당량) 올해 과학위('17.8. 인도네시아) 자원평가 결과, 변경 유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합의사항 유지
- (쿼터에서 차감되는 어획물) 우리 측은 '18년도부터 이를 전면 이행 예정이며, '15년부터 조업선에 방류·폐기 자체를 권고하는 한편, 5톤을 방류·폐기 관련 유보량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

#### 회원국별 이행현황

일본	'16년부터 폐기/방류 관련 유보량으로 20톤을 설정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를 상향 검토 예정
호주	유어어업(recreational fishing)용으로 250톤 설정
뉴질랜드	'0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폐기/방류용으로 20톤 및 유어어업 및 전래어업용으로 9톤 설정
대만	'16년에 폐기/방류용으로 10톤 설정
남아공	이행을 위해 일정부분 차감 예정이나 정확한 물량은 미정
인도네시아	내부 절차 지연으로 아직 미정임
EU	최근 몇년간 조업실적 없음



CONFÉRENCE  
MINISTÉRIELLE DE L'OMC  
Buenos Aires - ARGENTINE 2017





# 제3장 통상

## 1. 한-이스라엘 FTA

1.1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회기간 협상	60
1.2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61
1.3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62
1.4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63

## 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2.1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4
2.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5
2.3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6
2.4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7
2.5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8
2.6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9
2.7 제11차 WTO 각료회의	70
참고. 제11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각료결정 ('17.12.13.)	71

## 3. 미국 수입수산물 현지조사



# 1

## 한-이스라엘 FTA

### 1-1

###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회기간 협상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회기간 협상
- 기간/장소 : 2017.2.19.~2.23. 이스라엘 예루살렘

#####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해외수산협력센터
- 이스라엘 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시장접근

- 양측 자유화 수준 균형달성을 위해 이측 추가개선을 요구하고, 2차 리퀘스트 및 3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

##### 2. 원산지

- 완전생산기준(바다의 표기, 원양산 요건) 조항과 PSR 품목리스트를 위주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이측의 이해 제고 및 합의 유도
  - EEZ 조업 수산물 등에 대해 우리측 원양산업현황, 기체결 FTA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국주의 채택 합의

**1-2****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 기간/장소 : 2017.3.20.~3.24. 서울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해외수산협력센터
- 이스라엘 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1. 시장접근**

-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패키지\*를 작성·교환하고, 그 외 추가개선이 필요한 관심품목\*\*의 기대수준 파악 및 의견 교환

\* (이 측) 자동차, 냉장고 등 양허개선 / (우리 측) 자동, 의료기기 등 양허개선

\*\* (우리 측) 다량어 가공품, 전자부품, 화장품 등 / (이 측) 천연꿀, 와인, 아몬드 등

**2. 원산지**

- 이 측이 제시한 PSR 품목리스트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이 측의 이해 제고 및 합의 유도
  - 이 측은 어류 등(3/5/12류)에 대해 첨가물의 역외산 사용시에도 WO 인정을 요구하는 등 완화된 기준 제안

## 1-3

##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 기간/장소 : 2017.4.19.~4.30. 예루살렘

####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해외수산협력센터
- 이스라엘 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시장접근

- 핵심관심품목에 대한 최종 패키지\*를 교환하여 실질적 타결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5차 양허안 교환('17.5.3) 합의

\* (우리 측) 자동, 의료기기 등 양허개선 / (이 측) 자동차, 냉장고 등 양허개선

#### 2. 원산지

- 해수부 관련 쟁점사항인 ①기국주의, ②완전생산영역에 EEZ 대체문구 채택, ③수산물 PSR 모두 우리측 제안 방향으로 합의

#### 3. 영토조항

- 해양영토와 관련, 이 측이 제안한 EEZ 표현의 삭제를 요청하고 기체결 FTA와 같이 'EEZ'를 간접 표현한 대체문구 제안

\* 팔레스타인 지구 내 이스라엘 불법정착촌의 이 측 영토 포함 요구에 불수용 입장 견지(외교부)

**1-4****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 기간/장소 : 2017.5.22.~5.26. 서울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해외수산협력센터
- 이스라엘 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II. 주요의제 논의결과****1. 원산지**

- 완전생산품 조항(4조)을 제외한 원산지 협정문 모든 조항에 합의
  - (완전생산품 조항) 그간 해양광물, 수산물 등의 완전생산품의 생산영역기준을 원산지분과에서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총칙 영토정의 논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함을 양국 간 합의

**2. 영토조항**

- 우리 측은 이 측이 요구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유대인 정착촌의 명시적 영역 포함 요구 불수용, 정착촌 생산품의 관세 등 취급방침에 대해서는 신정부 지침에 따라 재논의 예정

## 2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2-1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2.27.~3.3. 제네바

##### 2. 참석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금지보조금 범위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과잉어획 및 과잉 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 향후 계획

- 의장은 금지보조금 범위, 어업관리제도에서 RFMOs와 연안국의 역할, 개도국/최빈개도국 개발 등에 대하여 면담 진행하였으며,
  - 향후 관련 국제기구 초청,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

## 2-2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4.9.~4.13. 제네바

#### 2. 참석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연세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어업관리제도(FMS)

- ACP 그룹, LDC 그룹, Fish friend Group 등 대다수 국가들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목표가 보조금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FMS는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연안국의 관할사항이라는 입장  
– 반면, 우리나라, 일본은 FMS가 보조금 규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이었으며 FMS와 개도국 S&DT를 연계하자는 입장임

#### 2. 향후 계획

- 의장은 최근 제안서 제출국(proponents)과 상의하여 향후 논의될 전체 주제를 정하고 부활절 휴가 후에 회람하기로 함

## 2-3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6.13.~6.16. 제네바

#### 2. 참석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주요 논의 내용

- 투명성(보조금 통보), 동결(신규 보조금 도입 금지), 분쟁해결, 제도설계, 이행, 용어 정의 등 주제별 논의

#### 2. 관찰 및 평가

- 통보, 동결, 분쟁해결, 제도규정, 정의 등 그간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1차적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음
  - 상기 조항들은 금지보조금 규율의 정도와 상호연관이 되어 있어 금지보조금 규율에 대한 논의가 성숙된 이후 본격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입장

**2-4****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9.27.~9.29. 제네바

**2. 참석규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주제네바 대표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II. 주요의제 논의결과****1. 주요 논의 내용**

- 수산보조금 규율 논의의 핵심 주제인 금지규율(IUU어업,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어획능력 증강, 운영비용), 동결, 우대조치(신축성, 조건) 논의

**2. 주요 회원국 입장**

- (EU) 금지규율의 이행 차원에서 어획능력 증강 관련 금지보조금 및 과잉어획상태의 어종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보조금의 목록화 방식(listing approach)을 지지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과잉어획상태의 어종에 대해서 수산보조금 및 수산자원관리의 부정적 영향을 테스트(negative effect test)하여 보조금의 금지여부를 판단하는 효과기준 방식(effect based approach)을 지지
- (ACP, LDC, SVE 그룹)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어획능력 증강을 위해 규율적용의 유연성, 유예기간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

## 2-5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10.31.~11.3. 제네바

#### 2. 참석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주요 논의 내용

- 수직 통합 문서(RD/TN/RL/29)에 대해 지난 10월 1차 논의에 이어 범위(scope), 금지(prohibitions), 개도국 우대(S&DT), 투명성(transparency)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 2. 주제별 논의 결과

- (범위) 대다수 국가들이 규율의 적용범위로 야생해양어획(wild marine capture)을 지지함
- (금지) IUU어업, 과잉어획, 과잉능력 등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대해 상이한 회원국들의 입장차이가 재차 확인됨

**2-6****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7.11.13.~11.17. 제네바

**2. 참석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II. 주요의제 논의결과****1. 주요 논의 결과**

- 중국의 IUU어업 규율 제안서와 미국의 투명성 강화 관련 비공식 제안서(room document)를 포함한 9개 제안서를 수직으로 통합한 수직 통합 문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문서 수정본(RD/TN/RL/29/Rev.1)을 도출함
- IUU어업 및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규율과 관련하여 규율별로 소규모 그룹회의를 거쳐 비공식문서(non-paper)를 도출함

**2. 관찰 및 평가**

- 금지보조금 규율(과잉어획된 어종, IUU 어업 정의 등), 개도국 우대 등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 지속
  - 미국 등은 제11차 각료회의(MC-11)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목표 시기가 2020년인 SDG14.6에 따라 MC-11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2-7

## 제11차 WTO 각료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1차 WTO 각료회의
- 기간/장소 : 2017.12.7.~3.3. 부에노스 아이레스

#### 2. 참석규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주제네바 대표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KMI, 연세대,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주요 논의 결과

-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됨
  -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임
- IUU 규율 방식에 대한 사항과 추가 통보 의무 사항은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로 이번 각료결정에서 제외됨

#### 2. 관찰 및 평가

-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4.6조상의 목표인 '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에 따라 제12차 WTO 각료회의(2019년)에는 실질 규정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 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참고****제11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각료결정 ('17.12.13.)****MINISTERIAL DECISION FISHERIES SUBSIDIES****The Ministerial Conference Decides as follows :**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Building on the progress made since the 10th Ministerial Conference as reflected in documents TN/RL/W/274/Rev.2, RD/TN/RL/29/Rev.3, Members agree to continue to engage constructively in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dopting,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in 2019, an agreement o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disciplines that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ies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nd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UU-fishing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y Member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se negotiations.

TN/RL/W/274/Rev.2, RD/TN/RL/29/Rev.3 문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만들어진 진전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하고 차별적인 조치(우대조치)가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정을 2019년의 각료회의까지 채택하기 위한 관점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속할 것에 합의한다.

2. Members re-commit to implementation of existing notification obligations under Article 25.3 of the ASCM thus strengthening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fisheries subsidies.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SCM) 25.3조의 현행 통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한다.

# 3

## 미국 수입수산물 현지조사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미국 수입수산물 현지조사
- 기간/장소 : 2017.9.11.~9.15. 알래스카

#### 2. 참석규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한국수산무역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주요 논의 내용

- 향후 알래스카 명태의 對한 수출 계획 및 한·미 FTA에 따른 수산물 수출 여건 변화 조사

#### 2. 관찰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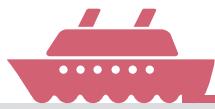
- 미측은 연간 약 150만 톤의 명태를 생산하고 있으며, Trident Seafoods는 그중 약 27%를 차지하는 1위 생산업체임

\* 알래스카 명태 조업쿼터 약 150만 톤(베링해 약 130만 톤, 알래스카만 약 20만 톤)

– 당사는 한국이 내수 수급을 위해 알래스카산 수입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통명태를 2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충하고, 한·미 FTA 재협상 시 TRQ 물량 상향을 연방정부에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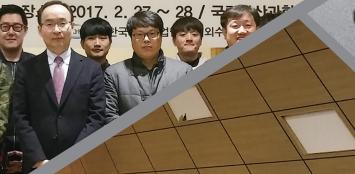
## 부록 국제옵서버 교육

- |                       |    |
|-----------------------|----|
| 1. 201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76 |
| 2. 2017년 하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78 |



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회

장소: 2017. 2. 27 ~ 28 / 국립산과원  
주최: 한국 옵서버 협회 외수부



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회

교육



# 1

## 201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I. 교육개요

#### 1. 교육개요

- 교육명 : 2017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기간/장소 : 2017.2.27.~2.28. 국립부산과학관

#### 2. 참석자

- 교육강사 : 해양수산부 이대섭 주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이갑돌 사무관, 이재봉 선임연구사, 부산일보사 정대현 부장
- 참석자 : 옵서버,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업계 등 총 28명



### II. 세부내용

#### 1. 목적

- 국제기구의 최신 동향 교육 및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방안
- 옵서버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공적 기능 강화
- 옵서버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 옵서버 업무 협조 도모

#### 2. 내용

- 해수부 정책방향 소개
  - 옵서버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승선경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 올해부터 옵서버 역량개발을 위한 외국어 학습비 지원 예정
-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령 해설
  - 사례분석을 통한 법령의 이해



- 현장 사진 촬영법
  - 사진 촬영 시 일반적 유념사항 및 선상 생물시료 촬영의 팁
- 옵서버 운영 규정 개정안
  -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세분화하여 매 조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연간 평균점수로 등급 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 주요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최신동향 파악
  - WCPFC 옵서버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위성통신장비 및 위성조난신호기 추가 지급 예정(WCPFC 수역에 한함)

#### **WCPFC 안전장비 규정 개정사항('17.1.1.시행)**

각 ROP 공인 옵서버 프로그램은 자국 프로그램의 옵서버에게 조사선박 승선 전에 다음 사항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① 허가된 독립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위성 장비(An approved independent two way communication satellite device)
- ② 방수형 개인용 위성조난신호기(A waterproof personal lifesaving beacon)

### **3. 기대효과**

- 옵서버들의 주요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최신동향 숙지
- 옵서버의 청렴한 직업의식 향상
- 옵서버 보고서 및 자료 작성법과 보고 능력 향상
- 업계의 옵서버 업무협조 당부를 통한 옵서버 업무 효율성 제고



# 2

## 2017년 하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I. 교육개요

#### 1. 교육개요

- 교육명 : 2017년 하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 기간/장소 : 2017.10.23.~10.25.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 2. 참석자

- 교육강사 : 국립수산과학원 이갑돌 사무관, 이재봉 연구관, 김장근 박사,  
부산일보사 정대현 부장, 대한생존수영협회 한병서 협회장, 이민우 지도사
- 참석자 : 옵서버, 해외수산협력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업계 등 총 27명



### II. 세부내용

#### 1. 목적

- 국제 규정, 조사기법, 소프트웨어 교육 등 직무 교육을 통한 옵서버 전문성 함양 및 업무 능률 향상
- 청렴교육을 통한 공적 기능 강화
- 안전교육을 통한 근무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 2. 내용

- 주요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최신동향 및 자료수집 방법
  - 옵서버 의무승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최근 변경된 CCAMLR 옵서버 로그북 작성요령 설명
- 자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 (MS Excel)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유용한 엑셀함수 및 데이터 분석 실습
  - (Surfer\*) 서퍼를 활용하여 해도 위에 어획량 표현방법

\* 수집한 어획량, 노력량 등의 자료를 지도(해역) 상에 나타내 표현하는 시각화 프로그램



- 현장 생물시료 사진촬영 기법 교육
- 국제기구의 옵서버 자료의 활용 현황
-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 해상 근무중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생존수영 훈련
  - 생존수영의 이론 및 실기

### 3. 기대효과

-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옵서버 자료의 양질화를 통해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직무교육을 통한 자료의 정확성 제고, 청렴교육을 통한 옵서버 독립성 확보
- 비상상황 대처 능력 배양을 통해 해상 근무중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익사사고 발생 위험률 저감



2017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발 행처 해외수산협력센터

발 행 일 2017년 12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 화 044-868-7362

인쇄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